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#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6년 01월 25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 
(영문명) Leewoon Asset management Co., Ltd.  
(홈페이지) <http://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, 605호(여의도동, 익스콘벤처타워)  
(전 화) 02-786-7867

대 표 이 사 : 김병국

담 당 임 원 : (직 책)이 사  
(성 명)이한민 (전 화)02-786-7867

작 성 자 : (직 책)이 사  
(성 명)이한민 (전 화)02-786-7867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11-11-1호)

### 주주총회소집 결의

1. 일시	2016. 01 05	
2. 장소	당사 회의실	
3. 의안 주요내용	제1호의안 : 사업목적 추가 제2호의안 : 상호 변경의 건	
4. 이사회 결의일(결정일)	2016. 01. 05	
-사외이사	참석(명)	-
참석여부	불참(명)	-
-감사(감사위원)	참석여부	-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	

(제11-11-2호)

### 임시주주총회 결과

1. 결의사항	제1호의안 : 사업목적 추가 제2호의안 : 상호 변경의 건 (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)
2. 주주총회 일자	2016. 01. 05
3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

#### 【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】

구 분	내 용		이 유
1. 사업목적 추가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		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따른 추가
2. 사업목적 삭제			
3. 사업목적 변경	변경 전	변경 후	